

기업연구소를 설립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?



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

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연구개발비 발생액의 25% 세액공제

연구개발 비용의 범위

- ①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(연구 보조원)의 인건비
- ②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
- ③ 연구·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연구·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

세액공제 25%

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가능 업종

제도 취지

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영리기업(개인기업 포함)이면 누구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,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이외의 활동(영업, 생산, 관리)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, 인력,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

과학기술분야

• 제품개발에 해당하는 건설, 금속, 기계, 생명과학, 섬유, 소재, 식품, 전기전자, 화학, 환경, 산업디자인, 기타 등의 분야

서비스 분야

- 유흥업 등 6개 분야¹⁾를 제외한 **대부분의 서비스 분야가 포함**됨 (2020.3.3. 변경)
 - 1) 일반 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제외

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요건

연구소 연구인력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면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.

구분			신고 요건
인적요건	연구소	<mark>벤처기업/</mark> 연구원창업 중소기업	연구전담요원 <mark>2명</mark> 이상
		소기업	연구전담요원 <u>3명</u> 이상 ※ 단,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
		중기업/ 해외기업부설연구소	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
		중견기업/대기업	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/ 10명 이상
	연구개발 전담부서	기업규모 무관	연구전담요원 <u>1명</u> 이상
물적요건	연구시설 및 공간요건		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 * 파티션 공간처리: 중소기업인 경우 50㎡ 이하 가능

[※]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혜택 차이 동일 (단,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만 제외)

인적 요건 _ 연구전담요원 자격

과학기술 분야

- ① 자연계분야*의 학사 이상 소지자
-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・기능 분야 기사 이상
- ③ 중소기업의 경우 (범위 확대)
 - <u>자연계분야 전문학사 이상</u> (전문대졸), 산업기사 이상 & <u>해당분야 2년 이상 연구경력**</u>
 - 특성화고, 마이스터고를 졸업한자, 기능사 자격 소지자 & 해당분야 4년 이상 연구경력**
- *자연과학, 공학, 이학, 의학계열 등
- ** 연구경력 인증 조건
 - 1) 타사 경력: 이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(이름, 소속, 기간, 업무 등 표기)로 증빙
 - 2) 자사 경력: 연구소 설립 이전에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, 연구소 설립 이후 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만 인정

인적 요건 _ 연구전담요원 자격

지식기반서비스 분야

- ① <u>학사 이상 소지자</u> (전공상관 없음)
- ②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소지자
- ③ 중소기업의 경우 (범위 확대)
 - <u>전문학사 이상 소지자</u> & 해당 분야 <u>2년 이상 연구 경력 (3년제 전문대는 1년)</u>
 - 서비스분야 2급 소지자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 해당 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

물적 요건 _ 연구공간

연구공간 설치 기준

[원칙]

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, 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

중소기업의 경우 (예외 적용)

연구공간 면적이 50㎡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,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함

* 어떤 경우에도 무허가건물, 가건물,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

[현판 부착 의무]

- 기업부설연구소용 <u>독립공간 입구</u>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알 수 있도록 <u>현판 부착</u>
- 기업부설연구소 현판은 스테인레스, 플라스틱, 나무 등 **반영구적 재질**로 하여야 함
- 현판의 기업부설연구소명과 인정받는 기업부설연구소명이 동일하여야 함
- 중소기업으로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

[참고] 사무실 공간 내 일부를 사용할 경우 _ 연구공간 내부 사진



[참고] 독립된 사무실이 있을 경우 _ 연구공간 내부 사진



온라인 설립신고

인정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춘 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 (www.RND.or.kr)

- 기업부설연구소/전담부서 신규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는 온라인 시스템 통해서만 가능
- 설립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온라인 신고방법은 홈페이지 "신규설립안내" 참고



온라인 설립신고 프로세스

※ 보완사항이 없다면 평균 7일 정도 소요됩니다.

